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9. 11.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정이유

-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부모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자 지급 기준 (안 제4조)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
- 지원대상 사업 마련 (안 제5조)
 - 저출산 대책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
 - 셋째자녀 이상 출생 시 출산축하금 지급
 - 그 밖에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원절차 및 방법 마련(안 제6조)
 -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출생 신고자에게 출산장려금 지원절차를 안내, 매월 1일까지 보건소 통보
 - 보건소장은 신청서 검토, 지급여부 결정, 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3. 관련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 (혼인과 출산)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을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 부모 및 영아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생아”라 함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영아를 말한다.
2.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자녀를 말한다.
3. “출산장려금”이라 함은 출산 장려와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출산축하금”이라 함은 출산을 축하하고 임신부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조례의 시행이후 국가 정책에 따라 유사한 목적으로 장려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의한 지원금을 조정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기준)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로 한다.

② 신생아 출산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자 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셋째자녀 이상 출생 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산축하금 지급
2. 그 밖에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절차) ①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즉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출생 신고자에게 출산장려금 또는 출산축하금 지원절차를 안내 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장려금 또는 출산축하금 지원신청서 1부
2.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사본 1부

③ 읍·면·동장은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격 여부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 여·부
3.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격

④ 출산장려금 또는 출산축하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서를 취합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명부를 송부받아 지급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 비치 등) 동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출산장려금 또는 출산축하금 신청대장을, 보건소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

른 출산장려금 또는 출산축하금 지급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출산장려(축하)금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

보호자	부 성명		생년월일			
	모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신생아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보호자와의 관계			출생신고일		
	분만의료기관				분만일자	
전화번호	주택			휴대폰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제 6 조 규정에 의거 출산장려(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 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 미 시 장 귀하						
거주기간	구미시 전입일	부			모	
지원대상 여부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 ※ 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 2. 지급기준이 불분명할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2호]

출산장려(축하)금 신청대장 (읍면동 관리용)

[illegible]

[별지 제3호]

출산장려(축하)금 지급대장 (보건소 관리용)

[illegible]

관 련 법 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 (혼인과 출산) ①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성보호와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